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2022년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

고베대학교 법학연구과 연구조수 서누리

1. 우생보호법 그리고 국가배상소송

일본에서는 우생(優生)사상에 기초하여 ‘불량한 자손의 출산을 방지하는 목적’(구 우생보호법 제1조)에서 장애인¹⁾에 대하여 불임수술(이하, ‘우생수술’) 및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생보호법’²⁾이라는 실정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심지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우생수술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³⁾ 실시되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행위이다.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의하면, 우생수술의 피해자는 약 2만 5000명(이 중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은 경우는 약 16,475명으로 추산), 임신중절수술의 피해자는 약 5만 9000명, 총 약 8만 4000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⁴⁾

이에 현재 일본 전역에서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⁵⁾⁶⁾ 그러나 일련의 소송들에서 우생수술의 위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우생수

- 1) 유전성질환뿐만 아니라 한센병,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우생수술의 대상이 되었다.
- 2) 우생보호법은 1948년부터 1996년까지 48년 간 존속하였다. 1996년 6월 의원입법에 의하여 우생보호법의 약 6항을 점하고 있던 우생학적 규정과 표현이 삭제·변경되었다. 그 결과, 의학적·경제적·윤리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과 모체보호목적의 불임수술 규정만이 남아, 명칭이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이 되었다(米本 昌平 외 3인, 優生學と人間社會, 講談社, 2000년, 172면).
- 3) 구 우생보호법 제4조,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4조 의사는 진단결과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유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질환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자에 대하여 우생수술을 할 공익상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우생보호심사회에 우생수술을 할 적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의사는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유전질환 외에 정신병이나 정신박약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제20조(후견인, 배우자,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호자가 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1조(시정촌의 장이 보호자가 될 경우)에서 규정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우생보호심사회에 우생수술을 할 적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e-stat 모체보호통계보고 참고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450029&tstat=00001024040&cycle=7&tclass1=000001030988&tclass2val=0>).
- 5)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부터이다. 그 중의 하나로 2019년 5월 28일 선고된 센다이지방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서누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한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년 제2호, 110면 이하 참고.

술이 행해진 지 약 50-60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 왔다.

2022년 2월 22일의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이하 ‘본건 판결’)⁷⁾은 우생수술에서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혁신적인 청구인용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⁸⁾ 본건 판결의 원심인 오사카지방법재판소의 판결⁹⁾에서는 우생보호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우생수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어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역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본건 판결은 제척기간의 적용에도 예외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국가에 의하여 조장된 차별·편견에 의하여, 사법예외의 접근이 제약된 장애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다.

2. 본건 판결의 내용

구 우생보호법에 근거하여 행해진 불임수술을 받은 본인 및 배우자(원고, 항소인)가 국가(피고, 피항소인)를 상대로 구 우생보호법이 성(性)과 생식에 대한 권리인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①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구 우생보호법을 입법한 것 ② 국회의원이 피해구제입법을 하지 않은 것 ③ 후생노동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이 피해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들의 청구들 중 ①은 인정되어 우생보호법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나, ②,③은 불인정되었다. 이 점은 원심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소개하고(1),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 점이 원심 및 다른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판결들과 다른 점이기에 때문에 이에 중점을

6) 우생수술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일람은 우생보호법 피해 변호단 홈페이지 참고 (<http://yuseibengo.starfree.jp/wp-content/uploads/2023/07/ichiran20230718.pdf>).

7) 令和4年2月22日 大阪高裁 判例時報2528号 5頁.

8) 卷 美矢, 旧優生保護法の合憲性と除斥期間の適用の例外, 法学教室501号, 2022년 6월, 125면.

9) 令和2年11月30日 大阪地裁 判例時報2506・2507号 合併号 69頁.

두고 소개한다(2).

(1) 우생보호법의 위헌성 및 피해구제조치의 부작위의 위법성의 유무

1)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구 우생보호법을 입법한 것

가.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평가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적용상의 위법이 되는가는 해당 입법의 내용 또는 입법부작위의 위헌성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만일 해당 입법의 내용 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불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은 아니다. 그 입법 내용 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보장되거나 보호되는 국민의 권리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의원의 입법 또는 입법부작위가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 할 수 있다(最高裁平成17年9月14日大法院判決·民集59卷7号2087頁、最高裁平成27年12月16日大法院判決·民集69卷8号2427頁參照).

나. 구 우생보호법 제4조~제13조의 위헌성

구 우생보호법 제4조~제13조(이하 ‘본건 각 규정’)의 입법목적은 우생이라는 관점에서 오로지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것(동법 제1조)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특정한 장애 내지 질환이 있는 자를 일률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이므로, 개인의 존중이라는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해야 한다. 본건 각 규정은 이와 같이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수단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 특정한 장애 등이 있는 자가 우생수술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기를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자유 및 의사에 반하여 신체침습을 받지 않을 자유를 명백히 침해함과 동시에 특정한 장애가 있는

자를 합리적 근거가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복지에 의한 제약이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명백히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¹⁰⁾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본건 각 규정과 관련된 위법한 입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이라 해야 한다.

2) 국회의원이 피해구제입법을 하지 않은 것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 제약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후생노동대신이 2004년 3월 발언¹¹⁾을 한 당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우생수술 피해자에 1000만 엔이 넘는 금액의 금전적 보상이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홍보나 정보제공을 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그것이 명백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입법조치를 해태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¹²⁾

3) 후생노동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이 피해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

후생노동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의 피해구제조치 부작위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원심의 판결내용을 인용한다.

10) **일본국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과 그 밖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門地)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11) 2004년 3월 24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우생수술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후생노동대신이 “그러한 역사적인 경위가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도 향후 생각해 나가고 싶습니다.”이라 답변한 발언을 말한다. 제159회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제4호(2004년 3월 24일) 후생노동대신 사카구치(坂口)의 발언 참조(<https://kokkai.ndl.go.jp/txt/115914260X00420040324/220>).

12) 원심에서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생수술의 대상이 되는 장애는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 여러 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그 장애의 내용·정도에 있어서도 다양한데다 그 상태가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생수술 피해자를 구제하는 입법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이나 피해 실태 등도 배려하면서 실체법 및 절차법의 관점에서 입법조치의 기본방향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선 일정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들은 우생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창설을 위한 후생노동대신이나 내각총리대신의 부작위의 위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오로지 역대 내각의 법률안이나 예산 미제출에 대한 위법을 말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입법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 것은 국회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본건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을 긍정할 수 없는 본건에서 국회에 대해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데 그치는 내각의 법률안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대 후생노동대신이나 내각총리대신의 부작위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

(2) 제척기간의 적용과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민법 제724조 후단의 성격: 제척기간

민법 제724조¹³⁾ 후단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最高裁平成元年12月21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43卷12号2209頁參照).¹⁴⁾

2)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724조 후단은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불법행위 시’라 정하고 있다. 피고는 불법행위 시가 우생수술을 한 때라 주장한다.

1948년의 위법한 입법행위에 의하여 제정된 구 우생보호법 중 본건 각 규정에 따라 우생수술에 의하여 신체침습과 더불어 그 생식기능을 불가역적으

13) **일본 민법 제724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국가배상법 제4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14) 最高裁平成元年12月21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43卷12号2209頁

“민법 제724조 후단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동조 전단에서 3년의 단기시효를 정하고, 또한 동조 후단에서 20년의 장기시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의도하는 동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조 전단의 3년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 인식이라는 피해자 측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완성이 좌우되지만, 동조 후단의 20년의 기간은 피해자 측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확립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로 상실시키는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1에 대해서는 1965년 내지 1966년 경, 원고2에 대해서는 1974년 5월 24일 경이다.

그러나 위법한 입법행위로 인한 원고1 및 원고2에 대한 권리침해는 신체기능에 대한 침습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 우생보호법에서 일방적으로 ‘불량’하다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낙인이 찍혔다고 할 상태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도 위법한 입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해야 하며, 그러한 위법한 침해는 우생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6년 법률 제105호)의 시행일 전일인 1996년 9월 25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고3은 스스로 수술로 인한 신체적 침습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원고3에 대한 권리침해는 아내인 원고2에 대한 권리침해와 불가분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침해의 내용과 그 계속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불법행위 시’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끝난 1996년 9월 25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3) 제척기간의 적용 제한의 인정가능성

원고들은 각자가 안고 있는 장애로 인해 우생수술의 위법성을 이해하고 법적 구제수단이 있음을 인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점,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제약이 제거되지 않은 점이나 구 우생보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강화·증폭된 적이 있었던 바, 이것은 모두 피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원고들은, 본건과 같이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경우에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인 원고들의 희생 아래 가해자인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등을 지적하며, 본건에 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의·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그러므로 그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34조 후단의 규정은 불법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행위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에 두면, 그동안에 증거자료가 흩어져 가해자가 아닌 자가 반증수단을 잃어 소송 상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의 인식 여하를 막론하고 일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로 지목되는 자의 이해의 조정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제도목적·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당하지 않다.

그러나 제척기간 규정이 예외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데도 법정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最高裁平成10年6月12日第二小法廷判決·民集52卷4号1087頁參照¹⁵⁾)나 [2] 피해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을 특별히 만들어내어,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민법 제915조 제1항 소정의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살해의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最高裁平成21年4月28日第三小法廷判決·民集63卷4号853頁參照) 등 피해자나 피해자의 상속인에 의한 권리행사를 객관적으로 불능 혹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있고, 게다가 그 사유가 해당 위법행위 자체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정의·형평의 관점에서 시효정지 규정(민법 제158~160조¹⁶⁾)의 법의(法意) 등에 비추어 제척기간 적

15) 해당 사건은 예방접종에 의하여 중증의 심신장애가 생긴 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最高裁平成10年6月12日第二小法廷判決·民集52卷4号1087頁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 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 6개월 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후 해당 피해자가 금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이 된 자가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724조의 법의(법의)에 비추어 동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16) **일본 민법 제158조**(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완성유예) ①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나 성년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에 대하여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가 된 때 또는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

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예외적이라 하여도, 법 해석상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4) 원고들의 구체적 사정(우생수술을 받게 된 경위)

가. 원고1

원고 1은 중학생 때 일본 뇌염에 걸려 고열이 나서 그 후유증으로 지적 장애가 생겼다. 1960년 혹은 1961년경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술이 불임수술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기 때문에, 원고1은 언니 외에는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원고1의 언니는 2018년 5월 21일 센다이에서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되었고, 우생수술에 관한 법률상담이 실시됐다는 소식에 접하고, 다음날인 22일 오사카변호사회에서 법률상담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원고1에게도 뉴스 내용을 알렸다. 원고1은 스스로가 받은 불임 수술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 1은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까지 자신의 받은 불임수술이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것인 줄은 몰랐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은 늦어도 1966년경에는 자신이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식했지만, 그것이 우생수술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듣지 못했고, 또한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말하지 않도록 당부 받았다. 언니 외에는 상담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센다이에서의 소송 제기를 알게 된 언니를 통하여 해당 소송의 제기를 알게 될 때까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원고1이 제소

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 권리에 대하여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59조(부부간 권리시효 완성유예)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는 혼인 해소 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상속재산에 관한 시효의 완성유예)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 관리인이 선임된 때 또는 과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천재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 유예) 시효기간 만료 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4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8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와 관련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1의 어머니가 원고1이 받은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제3자에게의 발설을 금지한 것은, 우생수술의 대상이 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원고1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인정된다.

나. 원고2와 원고3

원고2는 출생 시부터 양쪽 귀가 모두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및 언어기능상실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1974년 5월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이후 월경이 멈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농학교 선배에게 상담하여 불임수술이 실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불임수술을 받은 것인지를 몇 차례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원고2는 우생수술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소송이 효고현(兵庫県)에서 제기된 것을 그 제기일인 2018년 9월 28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오사카청력장애인협회의 헬퍼로부터 수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오사카청력장애인협회 임원 등으로부터 조언을 얻어 남편인 원고3과 함께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 2는 헬퍼가 효고현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알려주기 전까지 구 우생보호법의 존재를 몰랐다.

원고 2는 1974년 5월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월경이 멈춘 점 등에서 불임수술이 행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지만, 어머니가 그 의문에 명확하게 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효고현에서 우생수술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8년 9월 28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헬퍼로부터 알게 될 때까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원고2와 원고3이 제소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2의 어머니가 원고2에게 우생수술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피한 것은 원고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생수술 대상이 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원고2가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인정된

다.

다. 소결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본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받은 불임수술이 구 우생보호법에 근거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2018년까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수단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생수술의 대상이 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편견이나 이를 우려하는 가족의 의식·심리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송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기회에 접근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편견이나, 이를 염려하는 가족의 의식·심리는 구 우생보호법이 “우생상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라는 목적에서 본건 각 규정에서 특정 장애 내지 질환을 가진 자를 일방적으로 ‘불량’으로 취급하여 본인의 동의 없는 우생수술을 법적으로 인정한 본건의 위법한 입법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된다.

5) 본건은 제척기간의 적용의 예외에 해당

원고들은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의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사법예의 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이 가진 장애 그 자체는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창출·조장되는 것이라 생각되나, 피고가 원고들이 우생수술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적극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국헌법은 개인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특정한 장애 내지 질환을 가진 사람도 평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취지를 감안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삭제된 구 우생보호법 규정은 우생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

생을 방지한다는 우생사상을 전면으로 하고(제1조), 일방적으로 특정한 장애 내지 질환이 있는 자를 불량으로 취급하여, 생식기능을 불가역적으로 상실시키는 우생수술을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비인도적 차별적 내용의 법률로서 그 인권침해 정도가 크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이러한 입법 및 이에 기초한 시책이 그 규정의 법적 효과를 넘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열악한 유전적 소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피임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우생보호법에 따라 임신·출산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우생사상의 보급으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우생정책에 협력하여 열악한 유전병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열악한 유전을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생보호법이 있으며”, “국민우생의 목표는 국민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체의 건강 및 경제적 보호와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예방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제2목적은 국민우생 본래의 목적으로…악질의 유전성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생보호법에 의하여 우생수술이나 인공중절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술한 고등학교용 교과서(1950년경)를 비롯한 각종 자료 등이 역사의 기록·기억으로 남아 있다. 구 우생보호법의 존재와 피고의 우생보호정책이 동법의 우생수술 대상이 된 장애 내지 질환에 대해 이전부터 있었던 차별·편견을 정당화·고착화하고 이를 상당하게 조장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우생수술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기회에 대한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은 원고1 및 원고2의 장애를 기초로, 위법한 입법행위에 의해 제정된 구 우생보호법 본건 각 규정의 존재 및 이에 기초한 피고의 시책과 사회적 차별·편견이 맞물린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정도가 강하고, 헌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가 상기 입법·정책에 의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편견을 정당화·고착화하는 등 조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기회에 접근이 현저하게 곤란한 환경에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제척기간의 적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공평의 이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해야 한다. 권리 행사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기회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곤란한 환경이 해소된 후 6개월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제척기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상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본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원고1은, 우생수술을 받은 이후 오랫동안 우생수술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기회에 대한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운 환경에 있던 중 원고1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언니가 2018년 5월 21일 센다이 소송 제기로 변호사에 의한 우생수술에 관한 법률상담이 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1에게도 그 내용이 알려졌다. 경과 속에서, 6개월 이내인 2018년 9월 28일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1의 본소청구권에 대해서는 상기 시효정지 규정의 법의(法意)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은 제한되고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2는 우생수술을 받은 이후 오랫동안 우생수술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기회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남편인 원고3도 원고2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동일하게 이러한 접근이 현저히 곤란한 환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2는 헬퍼로부터 우생수술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소송이 효고현에서 제기되었음을 그 제기일인 2018년 9월 28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알게 되었다. 원고2 및 원고3의 본소청구권에 대해서도 상기 시효정지 규정의 법의(法意)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은 제한되고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본건 판결에 대한 분석

(1) 일본민법 제724조 후단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불법행위 시’의 해석

오사카지방법재판소의 원심 판결에서는 우생수술이 행해진 시기를 ‘불법행위 시’로 하고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반면, 본건 판결에서는 우생보호법이 폐지되고 난 후를 불법행위 시의 기산점으로 하고 있다.

오카야마대학의 호리구치(堀口)에 의하면 제척기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종래 학설상 논의되어 오던 방법은 i. 민법 제724조 후단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해석하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것, ii. 원고의 손해를 일회적인 우생수술에 의하여 생식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닌 구 우생수술법의 영향에 의하여 존엄이 훼손된 상태가 지속된 ‘인생침해’로 파악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보다 늦추는 것 또는 iii. 정의·공평의 이념이나 시효정지규정의 법의(法意)에 따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¹⁷⁾ 본건 판결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iii.설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¹⁸⁾

생각건대, 본건 판결은 iii.설에 입각해 있지만, ii설의 관점도 반영되어 있다. 우생수술의 경우 구체적인 신체에 대한 침습이 발생한 것은 우생수술이 행해진 때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시부터 일본에서는 20년 도과 후 제척기간이 완성되고, 그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 원심판결의 내용이었다. 반면 본건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권리침해의 내용과 그 계속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불법행위 시’는 원고들 모두에게 위법한 침해가 끝난 1996년 9월 25일”이라고 보고 있다. 즉, 우생수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우생보호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해내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우생보호법의 존재는 ‘권리침해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건 판

17) 堀口 悟郎, 旧優生保護訴訟大阪高裁判決, 新・判例解説WATCH31号, 2022년 10월, 32면.

18) 참고로 i.설은 한센병환자에의 불임수술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결은 우생보호법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본 것으로 해석된다.

(2) 제척기간의 적용 제한: 제척기간의 취지를 넘어 시효정지 규정의 법의(法意)를 고려

원심판결인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는 “원고들이 장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받은 불임수술이 구 우생보호법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을 몰랐고, 2018년까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우생수술의 대상이 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나 편견이 있었다는 점이 엿보인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들이 제소에 이르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들을 탓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 측의 인식을 묻지 않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이해관계를 조정이라는 제척기간의 목적, 취지에 입각하여 제척기간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본건 판결에서는 제척기간의 취지를 넘어서, 시효정지 규정의 법의(法意)를 고려하여 제척기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하지 않으나, 제척기간에 있어서 일절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거 판례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사례를 들어 제척기간의 적용이 제한되는 예외의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실시하고 난 후, 본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⁹⁾ 그 이유로는 “인권침해의 정도가 강하고, 헌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가 상기 입법·정책에 의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편견을 정당화·고착화하는 등 조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19) 堀口 悟郎, 앞의 논문(17) 33면. 堀口는 과거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확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기회에 접근이 현저하게 곤란한 환경에 있었던”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공평의 이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나 상담 기회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곤란한 환경이 해소된 후 6개월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제척기간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실시하고 있다. 시효정지 규정의 법의(法意)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시효가 정지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조치대학의 마키(巻)는 원고가 소송제기의 전제가 되는 정보 등에의 접근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에 있던 것은, 국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헌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국가는 사회에의 장애인 등의 차별편견의 해소를 추진해야 할 ‘지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전개가 주목된다고 한다.²⁰⁾

(3)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과 우생수술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동향

2019년 4월 24일 ‘구 우생보호법에 기초하여 우생수술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優生手術等を受けた者に対する一時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이 제정, 시행되었다. 동법은 우생수술을 받은 자에게 일률적으로 320만 엔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동법에 대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우생보호법의 위헌성이나 행정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개별 통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지급 대상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충분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²¹⁾

본건 판결 이후 2022년 3월 11일 도쿄고등재판소, 2023년 3월 16일 삿포로고등재판소, 2023년 3월 23일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우생수술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는 각 소송에서 연이어 상고를 한

20) 巻 美矢, 앞의 논문(8) 125면.

21) 일본변호사연합회, 구 우생보호법에서 실시된 우생수술 등에 관한 전면적인 피해 회복의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 2022년 9월 30일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civil_liberties/year/2022/2022_3.html)

바, 앞으로의 소송의 추이가 주목된다.

4.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의 시사점

우생수술이 추진된 근거가 ‘공익’이라는 사실에 역사학자 후지노(藤野)는 주목한다. “타니구치(谷口)는 1948년 6월 19일 참의원 후생위원회에서 우생보호법의 강제불임수술은 ‘사회공공의 입장에서’ ‘공공을 위하여’ 행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²²⁾ 불임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분명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나, 이것이 ‘공익’을 위해서 허용된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국민의 소질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일본이 전후(戰後) 빠르게 부흥하려는 때에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유전이라 간주된 장애인, 병약자에게 불임수술을 해도 좋고, 그것이 ‘사회공공’을 위하여 ‘공익’을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²³⁾ 그리고 우생보호법의 1949년 개정으로 동법상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사유에 ‘경제적 이유’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전후의 인구 증가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조치였다. 피임의 방법이나 교육이 불충분했던 시대에 빈곤 가정에서 아이가 연이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형법에 낙태죄를 두고 여성의 임신중절을 금지해 왔다.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했던

22) 藤野가 지목하고 있는 발언은 제2회 국회 참의원 후생위원회 제13호 (1948년 6월 19일) 谷口弥三郎의 다음의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패전으로 영토의 40% 이상을 잃은 결과, 매우 좁아진 국토에서 8천만 국민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부족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중략)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민의 요청이지만 매년 백만 명 이상이 이민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 몇 명이라도 좋으니 노력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식량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미개간지를 개척하고 수산어업의 발달을 촉진하여 증산 방면으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 생각되는 것은 산아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는 비교적 우수한 계급의 사람들이 보통 산아제한을 하고, 배움이 없는 자(無白覺者)나 발달장애인(低腦者) 등은 하지 않아 국민 소질의 저하 즉 민족의 역도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역도태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 환자는 1968년 약 6만 명, 1만 명 당 9.98명, 1948년 약 9만 명, 실명자도 마찬가지로 1만 명 당 12.77명, 1931년에는 7천600명, 그 중 선천성이 2천260명, 1935년에는 6천800명, 그 중 선천성이 4천203명으로 증가하고, 또한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浮浪兒)도 종전에는 그 반이 정신박약 즉 발달장애인(低腦)이라 하였지만, 지난달 규슈 각지의 후생시설을 순시했을 때 후쿠오카의 모모치쇼후(百道松風) 및 사가(佐賀)의 수용소의 조사를 보면 발달장애인은 각각 8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본 식량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천성 유전병자의 출생을 억제하는 것이 국민의 급속한 증가를 막는 데 있어서도, 민족의 역도태를 방지하는 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우생보호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s://kokkai.ndl.go.jp/txt/100214237X01319480619/13>)

23) 藤野 豊, 強制不妊と優生保護法——“公益”に奪われたいのち, 岩波書店, 2020년, 17면.

것이 우생보호법이었던 것이다.²⁴⁾²⁵⁾²⁶⁾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생보호법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²⁷⁾

우리나라는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에 대하여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법 제정 시부터 있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입법경위를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일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복리국가발전에 기여”라는 동법의 제안이유에서 본다면, 당시 추진하였던 산아제한정책과 결부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건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오늘날 사어(死語)나 다름이 없는 ‘우생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²⁸⁾ 둘째,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의 규정형식은 아직 태아의 장애를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기 전인 70년대에 제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장애인은 태어나지 않는

24) 毎日新聞取材班, 強制不妊—旧優生保護法を問う, 毎日新聞出版, 2019년, 189-190면.

25) 현재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임신의 계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동조 제1항 제1호)”이라 정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도 임신중절의 가능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통상 임신 만 22주 미만(후생사무차관통지)의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26) 일본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경제적 이유’는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정부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생겨났다(毎日新聞取材班, 앞의 책(24) 190-192면). 또한 “1960년대 말부터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우생보호법의 개정운동이 일어나, 1973년에는 개정법안도 제출되었다. 개정 내용은 임신중절수술의 조건에서 경제적 이유를 삭제하는 것, 그리고 출생 전 진단기술의 향상을 전제로 하여 태아가 중증의 장애나 병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른바, 태아조항)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여성단체나 일본의사회, 일본모성보호의협회 등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장애인단체에서는 태아조항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藤野 豊, 앞의 책(23) 47-48면) 이에 경제적 이유를 삭제하는 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27) 藤野 豊, 앞의 책(23) 24면.

28) 과거 우생학은 세계적으로 최선의 과학이었으며, 우생정책은 과학의 권위를 입각하여 추진되었다(毎日新聞取材班, 앞의 책(24) 86-87면.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책세상, 2022년 참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 행해진 단종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일본 외에도 독일, 스위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衆參議院厚生労働委員長, 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優生手術等を受けた者に対する一時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第21条に基づく調査報告書 중 第3編 諸外国における優生学, 2023년 6월, 40면).

것이 '복리국가발전'의 기여한다는 발상이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